

[사 건 명] 행심 2018 - 3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07. 0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출석정지 (~2018.07.16.까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7. 0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고, 피해학생(최□□)과 같은 반 학생이다.

나. 청구인이 2018. 6. 20. 페이스북 이벤트(컴퓨터 추천 이벤트)에 응모하는 글을 올렸는데, 피해학생은 ‘너는 이미 고사양의 컴퓨터를 갖고 있잖아’ 라고 댓글을 달았다.

다. 청구인은 2018. 6. 21. 9:45 피해학생의 댓글 때문에 컴퓨터 추첨 이벤트에 당첨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학생에게 따져 물었으나 피해학생이 ‘장난이었다’ 고만 하자, 화가 나서 피해학생의 목덜미를 뒤에서 때렸으며 이후 교실에 있던 막대 걸레로 피해학생을 때렸다.

라.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때리자 같은 반 친구인 이○○이 이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책상에 걸려 넘어졌다.

마. 이후 청구인은 교실에 있는 담임교사의 책상 서랍에서 커터칼날을 꺼내어 손에 쥐고서 피해학생을 위협했다. 그때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며 교실 밖으로 뛰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교실로 들어가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커터칼날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청구인과 피해학생을 교실 밖으로 불러 상황을 들었는데, 청구인은 그 와중에도 피해학생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다.

바. 피청구인은 2018. 6. 22.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2018. 6. 25.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일까지) 및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긴급조치를 내렸다.

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7. 4. 청구인에 대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 출석정지 31일(긴급선도조치 포함), 부가적 특별교육(학생 5시간, 학부모 10시간) 처분을 하였다.

## 2. 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 의견 청취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우선 출석정지(2018. 06. 25. ~ 07. 04.)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에는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을제1호증(통화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담임교사가 2018. 6. 22. 오전 11:25경 약 4분 45초 동안, 오후 2:21경부터 57초 동안 청구인의 보호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시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한 회의가 열렸으므로 담임교사가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청구인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8. 7. 4. 개최되고, 청구인은 2018. 7. 9. ‘조치결과 통보서’를 받았는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정지는 2018. 7. 5.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되어 있어서 통보서 수령일 보다 이전부터 출석정지를 명하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31일(우선 출석정지 기간 10일 포함)을 결정하면서 그 기간을 2018. 7. 5.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정하였다. 이에 학교폭력전담교사가 2018. 7. 4.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석정지 조치를 알렸고, 아울러 ‘조치사항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출석정지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 문자메시지로 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치결과 통보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에게 접근금지를 명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접촉금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접근금지의 규정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법령에 어긋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치사항 통지서’에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근거법령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호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조치원인’에 접근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접촉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사건 당시 이○○이 청구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청구인은 이전에 이○○으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으므로 다시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교탁 서랍에 있는 커터칼날을 꺼내었고, 피해학생이 아닌 이○○에게 커터칼날이 향하고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위협하였다고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건현장에 있던 같은 반 학생들의 다수 및 담임교사는 청구인이 손에 커터칼날을 쥐고 있을 당시 부근에 청구인과 피해학생만이 있었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이○○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커터칼날을 쥐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당시 위원들을 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에게 제척사유가 있는지, 회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청구인의 보호자에게도 같은 설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청구인은 2018. 6. 25. 피해학생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하였고, 2018. 6. 28. 피해학생과 만나 서로 화해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6학년인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31일의 조치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화해하였는지 여부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고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의 정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와 이 사건 출석정지로 인하여 약 22일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2018. 7. 17.부터 학교에 출석하여 학습을 하고 있는 점, 행정심판 심문에 참석한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이후 비교적 성실한 학습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아직 시비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출석정지를 명하여 학습의 중단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 중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정지 조치를 취소하기로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가적 특별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의 예방과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교육받는 과정인바, 이 사건과 같이 학부모가 학생 보다 5시간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 중 학부모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시간을 5시간을 감축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조치 중 청구인에 대한 출석정지 22일(~2018. 07. 16.까지) 및 학부모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을 초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조치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